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87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한정애·문진석·이학영
송옥주·김영배·박희승
추미애·이건태·신영대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의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둬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인공암벽장업”을 “인공암벽장업, 풋살장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한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설치하기”를 “설치하거나 이격거리를 두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이격거리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이격거리를”로 한다.

제3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u>인공암벽장업</u> ② (생략)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u>인공암벽장업, 풋살장업</u>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생략) <u><신 설></u>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한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u>

② (생략)

<신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

-----설치하거나
이격거리를 두기-----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

시설 및 이격거리를-----

-----.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u>시설을</u>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u>2. ~ 8.</u>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 ----- ----- ----<u>시설 및 이격거리를</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명령)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1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u> <u>3. ~ 9.</u>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